

한국도로공사 2019년 하반기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고졸공채]

1. 선발분야 및 예정인원(분야별 수행 직무는 NCS 직무기술서 참조)

구 분	행 정 직		기 술 직		
	행정	토목	설비	전산	전자
고졸공채(명)	8	10	1	1	3

2. 채용직급 : 인턴사원(채용형)

- ※ 인턴 신분으로 현장실습(5개월 내외,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 교육 및 실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적정수준 이상인 경우 정규직(8급) 임용

3. 지원자격

구 분	고졸공채
기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대상자의 경우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단,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제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년 2월 졸업예정인 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전문대 이상 중퇴, 재학, 휴학자 지원 가능 ※ 전문대 이상의 졸업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될 수 있음에 유의 ○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병역사항 - 제한없음. 단,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 공사 인사규정 제8조(붙임 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턴채용일(19.10.30 예정)로부터 발령지 근무 가능자 및 지방근무 가능자
필수 자격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자격증 소지(붙임 2)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고졸 검정고시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필기전형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실시(직무수행능력평가 없음)

4. 절차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내 용	일정(예정)	선발인원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상 온라인 접수(www.ex.co.kr) 필수자격증(붙임 2), 부가가점 자격증(붙임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기입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결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실시하며, 진행절차 중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바로 탈락 처리 (※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특히 필수자격증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관계기관 조회 불가 시 채점 미실시 및 탈락처리되므로 자격증번호 등 신중하게 기입) 입사지원서 상 입력된 각종 지원자격 사항은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추후 제출 (※ 자격증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생년월일 확인 후 진위 확인 예정, 본인확인기간 내 본인확인 미실시 인원 및 조회불가자(미기재, 오기재 등)는 필기전형 미응시자로 간주) NCS 기반 역량기술서 작성불량자는 서류전형 탈락 처리 	8. 5(월) 14:00~ 8.16(금) 15:00 (기간 내 24시간 입력 가능)	지원자격 충족 시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선발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상 본인 확인 (자격증 조회를 위한 본인확인 기간 : 8.26(월)~28(수) 14:00) 선발방법 : 지원자격 충족 시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선발 	8.26(월)										
필기전형 공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상 본인 확인(시험장소 및 시간) 	9. 3(화)										
필기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세부 시험장소는 필기전형 공고(9. 3) 시 확정 평가항목(과목 범위 붙임 4) :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선발방법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부가가점(붙임 3) 합산 ※ 별도 과락(불합격) 기준 없음 ※ 필기전형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 커트라인 및 본인 점수 공개 예정 (필수자격증 조회불가자는 미응시자로 간주하여 비공개) 	9. 7(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수</th> </tr> </thead> <tbody> <tr> <td>행정</td> <td rowspan="2">3</td> </tr> <tr> <td>토목</td> </tr> <tr> <td>전자</td> <td rowspan="3">5</td> </tr> <tr> <td>설비</td> </tr> <tr> <td>전산</td> </tr> </tbody> </table>	구분	배수	행정	3	토목	전자	5	설비	전산
구분	배수											
행정	3											
토목												
전자	5											
설비												
전산												
1차 실무진 면접 및 인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실무진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대상 : 필기전형 통과자 - 면접방법 : 공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면접(발표/토론면접) - 선발방법 : 필기시험 점수, 1차 실무진 면접전형 점수, 법정가점 합계 인성검사(조직적합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 : 필기전형 통과자 - 검사방법 : 1차 실무진 면접 당일 실시 / 부적격자 배제 	추후통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수</th> </tr> </thead> <tbody> <tr> <td>행정</td> <td rowspan="2">1.5</td> </tr> <tr> <td>토목</td> </tr> <tr> <td>전자</td> <td rowspan="3">3</td> </tr> <tr> <td>설비</td> </tr> <tr> <td>전산</td> </tr> </tbody> </table>	구분	배수	행정	1.5	토목	전자	3	설비	전산
구분	배수											
행정	1.5											
토목												
전자	3											
설비												
전산												
2차 경영진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대상 : 1차 실무진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통과자 면접방식 : 기본역량 및 인성면접 	추후통보										
최종합격자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시험 점수, 1차 실무진 면접전형 점수, 2차 경영진 면접전형 점수, 법정가점 합계 고득점자 순 	추후통보										

5. 채용목표제

구 분	고졸공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로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단, 대구·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제외 ○ 목표비율 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21%(소수점에서 반올림) ○ 방 법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각 전형(필기·실무진 면접·경영진 면접) 선발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1%'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각 전형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비율 1차 실무진 면접전형 대상인원의 20%(소수점에서 반올림) ○ 방 법 필기전형 결과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선발분야별 '20%'에 미달하는 경우(단, 최종 선발 예정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선발분야에 한함) 선발분야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단, 과락자는 제외)

6. 합격자 근무조건

- 보수수준 : 210만원 수준/월 (단, 8급 임용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지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등
- 근무지역 : 한국도로공사 전 사업장

7.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있어 채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전형 및 고졸공채 등 모든 전형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8. 문 의 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붙 임 : 1.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8조) 1부
2. 필수 자격증 기준 1부
3. 부가가점 기준 1부
4. 필기시험 출제 범위 1부
5.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1부. 끝.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필수 자격증 기준

□ 기술직 - 해당분야 기능사(산업기사, 기사 포함)

구분	대상 자격(1개 이상)
행정	전산회계운용사1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전산회계운용사3급, (부기 1급 ~ 3급 포함),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토목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환경기능사, 측량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설비	기계가공조립기능사(기계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메카트로닉스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검사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배관기능사, 환경기능사
전산/전자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부가가점 기준

□ 법정 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 전형별 만점의 5% / 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선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 고
재직직원	채용공고일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직원(전문직 및 실무직 직원 포함)	필기시험 만점의 5%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필기시험 만점의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자격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공 통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 1·2급	" 2%
	워드프로세서 1급(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행정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5%
기 술	해당 직종 기술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 5%
	해당 직종 기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 3%

- ※ 가점계산 방법 : 법정 가점 + 선택 가점(재직직원, 장애인 중 택 1) + 자격증 가점
- ※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10점) 초과불가
- ※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필기시험 출제 범위

□ 직업기초능력평가

구 분	출 제 과 목
행정직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술직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이전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이전지역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적용대상 시험

- 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모집 연 인원 5명을 초과하는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 ②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 ㉠ 경력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 경력직이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자를 말함
 - ㉢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경력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 ㉣ 연구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 연구직이란 연구직렬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자를 말함
(다만,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한함)
 - ㉥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연구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임용 예정 연구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 ㉦ 지역별 구분모집의 조건 채용의 경우
 - ㉧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또는 채용공고문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규정이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 ㉨ 본사에서 일괄 채용시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이전지역인재 여부 검증

-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응시원서에 "이전 지역인재"로 표기한 자에 대해 졸업증명서·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전 지역인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②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을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에서 연도별 채용목표비율을 곱한 인원수 이상으로 하고, 그 비율은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단,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 합격자 결정방법

- ① 시험방법과 합격하한선 등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 ② 시험방법과 하한선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③ 가항 및 나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목표 미달이 불가피하므로 채용목표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